

국 회 은 의 의 의 회

의안
번호 246

은 의 의 제 246 호

1979. 11. 26.

수 신 의 장

제 목 헌법개정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제출.

1. 국회법 제 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개정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.

유 칙 : 헌법개정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 23역. 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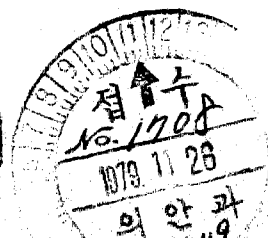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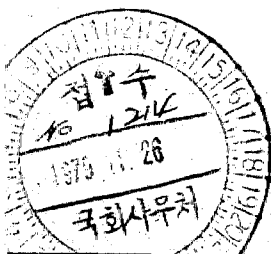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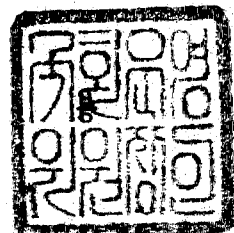
19. 11. 26
제 103 회 국회
제 8 차 회의

담 당	과 장	국 장	차 장	총 장	報告後	의 장
					상정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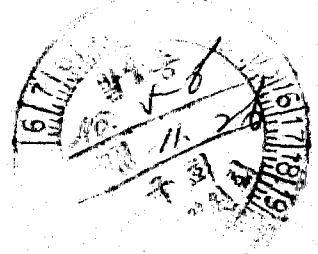
국 회 은 의 의 의 장

국

오



~~138~~



공백

憲法改正審議特別委員會 構成에 관한 提議案

議 番	案 號	246
--------	--------	-----

提議年月日 1979年11月26日
提議者 歐陽德委員長

1. 主 文

國會法 第43條의 規定에 依하여 憲法改正審議特別委員會를 28名으로 構成한다.

2. 提案理由

最近의 國內政治情勢의 急激한 變化에 따라 우리國會는 全國民的인 意思를 反映集約하는 새로운 民主憲法을 마련하기 爲하여 國會에 憲法改正審議特別委員會를 構成할 것을 提議한다.

공백